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정원 및 이용자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이용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2. 이용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 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센터 정보 게시
- 2) 기관 블로그 및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한 기관홍보
- 3) 지역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의 연계 및 홍보
- 4)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 전화 상담-전화 상담 후 방문
- 5)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 6) 홍보물 배포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인 홍보 등

제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 1)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 2)등급변동, 계약 기간의 종료,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3)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종료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2026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수 가 (단위: 원 / 회당)							
방문요 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구 분	수 가(단위: 원 / 회당)			
방 문 목 욕	차량이용(차량 내)	차량이용(가정 내)	차량 미이용 60분 이상	차량미이용 40분 이상
	88,990	80,230	50,100	40,080

2)본인부담금

구분		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 % ,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을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질환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5)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1)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본인부담금을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제3조 (이용료 등 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1)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산정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 ⑤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 목욕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기저귀교체,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옷 함께 개기활동, 요리함께 하기, 분리수거함께하기 등) 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라.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마.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

2)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 등 심신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급여는 오전 8시부터 22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만 제공한다.

3)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급별 급여표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4)급여비용의 가산

①심야가산: 22~익일 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②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 비용의 30%을 가산할 수 있다.

- ③공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 ④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⑤기타 가산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5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등)

구 분	내 용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기관은 직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며,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무자격·무단 행위에 관한 사항(의료행위, 약물 임의 투여 등)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9)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